

年齡에 따른 法令適用 類型에 관한 研究

李俊雨*

차례

I. 서 론

II. 연령별 적용 유형

1. 연령에 따른 개념
2. 법령상 연령범위 유형

III. 법제정비방안

1. 연령개념용어의 문제점
2. 기준연령의 문제점
3. 연령표시의 문제점
4. 법현실 변화와 연령조정 문제
5. 기타 정책과 관련된 기준연령

IV. 결 론

* 韓國法制研究院 研究委員, 法學博士

I. 서 론

법령의 입법과 적용에 있어서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법기술에 해당한다. 법률요건 중 주체와 객체, 법률행위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법령을 대응시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령체계의 분류 방법 중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것도 법제의 정비 및 개선에 유용하리라고 본다.

현행법령은 연령을 기준으로 살피면, 자연인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크게 성년과 미성년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다시 연령에 따라 유형화하여 그 적용되는 법령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분화된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이른바 노인법제라고 불리우는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있고, 완전한 독립적 유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연령에 따른 적용법리를 달리하는 일단의 유형을 찾을 수는 있다.

현행법령은 입법기술상으로 두 가지 규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일정한 범위의 자연인을 각각 별도의 개념화하여 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연령을 그 적용 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예컨대, 태아·영아·유아·소년·청소년·아동 및 미성년자 등이 전자의 방법에 해당하고, 12세 이하·6세 이상 12세 미만·18세 이상 등은 후자의 방법에 해당한다.

이 글은 현행법령에서 이상의 두 가지 방식에 따른 모든 규정을 전부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 문제점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의 규정 방식이 어떠한 통일적인 자연인의 분류 기준에 입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법총칙은 자연인의 분류를 오직 그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배우자·친족 등의 가족관계에 의한 혈연적 분류 및 당사자·제3자등 이해관계의 강약에 의한 분류를 두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어떠한 분류기준에 의하고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동일한 연령의 자연인을 각각의 법령규정에서 동일한 성격의 법률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범위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하는 문제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의 문제이다.

셋째, 현행 법령상의 연령기준에 따른 적용법리가 어떠한 법이념이나 법현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제에서 다른 연령의 자연인과 구분하여 특별히 법제적으로 보호하는 그 법이념의 근거, 그러한 연령 범위가 어떠한 법현실에 근거하였는가 하는 입법배경이나 이유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연인은 성년자에 비하여 어떠한 정도의 독립된 개체로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각종 이용요금의 감면은 어떠한 근거 아래에 그 감면비율을 결정하고 있는가, 동일한 연령의 미성년을 각종 이용요금의 감면규정에서는 동일한 감면비율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조사·분석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문헌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시도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상으로 가능하였다. 각각의 법령이 그 제정·개정된 시기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입법당시의 법현실이나 법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자연인의 능력이나 보호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에 따라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가설과 연구방법론에 의한 경우에도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발생 근거나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각 법령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입법취지나 근거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법령의 입법 중 외국의 법제도를 계수한 부분과 모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법사회학적인 실증적 연구는 입법의 기초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령의 관련 규정을 모두 추출하여 유형화하고 그 규정 상호간의 통일성, 모순성, 중복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법제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II . 연령별 적용 유형

1. 연령에 따른 개념

(1) 개관

현행 법령은 연령에 따라 자연인을 미성년자와 성년자로 크게 나누고 있다.

즉, 만 20세(이하 연령의 표기는 모두 만 연령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법령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20세는 행위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20세는 행위능력제도와 관련된 연령이므로 동 제도의 변화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다양한 기준 연령은 어떤 법제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제도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에 이러한 상대적 기준연령과는 달리, 법제도의 목적이나 법현실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대적 기준연령이 있다. ‘태아’, ‘유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는 인식능력과 관계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신체의 발달 중에서도 특히 그 母와의 독립성 즉, 육체적 자립성 정도에 따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법제도가 자연인의 인식능력 · 판단능력 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에 관계되는 경우는 육체적 자립성 정도와는 관계없다. 이 경우에 사용되는 기준연령은 인식능력 내지 의사능력 · 책임능력의 유무를 판단 ·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는 신체의 발달보다는 전반적인 국민 일반의 교육수준 내지 사회의 발달정도와 관계되는 면이 훨씬 강한 기준이다. 20세를 기준으로 한 행위능력제도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성년자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업무수행능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령에 의한 성년자의 분류는 대부분 업무수행능력을 세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자격기준, 퇴직연령, 취업연령, 노인연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밖에 사회보장과 관계되는 제도에서도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제도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친권자 등의 부양능력 · 보호능력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대상 연령의 자연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기 보호능력과 관련된다.

이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삼아 법령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은 제도의 취지나 제도의 전제되는 여건의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연령개념

상당수의 법령에서는 정의규정에서 일정한 연령층을 포괄하는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① 신생아

신생아란 출생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3호). 신생아의 사망은 보건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長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 신생아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보건과 양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¹⁾

② 영아

‘영아’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규정사례는 없다.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조)와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 「영아시설」을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동 시행령 제2조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용 3세 미만의 아동을 영아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규정례가 다시 i) 연령에 따른 세분화를 하지 않는 경우, ii)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로 규정하는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 iii) 분만직후의 영아(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²⁾ 등으로 나뉜다.

③ 유아

‘유아’에 관한 정의규정은 유아교육진흥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영유아

“영유아”란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제2호). 이는 다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를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2조).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학한 아동은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항).

영아, 유아 및 영유아에 관한 개념규정을 정리하면, 영아는 출생후 만3세 미만의 아동을, 유아는 만3세부터 만6세 미만의 아동을,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를

1) 신생아에 관한 의료(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3호), 예방접종 의무(결핵예방법 제11조), 조산사의 임무사항(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조산원(의료법 제3조제7항) 등.

2) 분만직후의 영아와 신생아의 구분이 애매하다.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는 이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73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제4항), 「3세 미만의 유아」(국민연금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1항) 등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³⁾

⑤ 아동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者」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제1호).⁴⁾ 동법은 아동을 다시 아동복지시설의 구분에서 영아시설은 3세 미만의 아동을 목적으로 하고, 육아시설은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2호, 제3호).

한편, 모자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와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者」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동법 제4조제3항).

아동의 개념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일부 법령에서만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8호, 검역법시행규칙 제24조제5항제3호).

이상을 종합하면, 아동은 미성년자 중에서 가장 넓은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넓은 경우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포함하게 되고, 일반적인 경우라도 만 18세 미만의 자는 모두 아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신생아, 영아, 영유아, 유아는 모두 아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⁵⁾

⑥ 소년

소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동법은 다시 소년을 i)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동법 제4조제2호), ii) 12세 이상의 소년(동법 제4조제3호), iii) 12세 미만의 소년(동법 제38조제2항), iv) 18세 미만의 소년(동법 제59조,

3) 만6세에 달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이 된다는 점(만5세 취학의 예외가 있음), 영아와 유아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념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밖의 다른 규정례는 「영유아 및 園兒」: 구강보건법 제17조, 「어린이 또는 유아」: 도로 교통법 제11조제3항, 제48조의3, 제48조의5가 있다.

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5) 예컨대, 6세 이하의 아동(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8호 단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4조), v)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소년원에서 퇴원: 소년원법 제43조제1항)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소년원법시행령은 보호소년이 법원소년부의 결정당시 12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임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12세 미만의 자는 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⁶⁾

그밖에 「소녀와 소년」, 「소년·소녀」라는 규정에도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5장 소녀와 소년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의 “15세 미만인 자”, “소년·소녀가장”(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4항제3호 다 및 라, 제50조의2제2항 제2호), 소년형사사건의 공판기일 우선지정(형사소송규칙 제179조) 등이다.

⑦ 청소년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청소년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4조) 청소년의 개념범위는 동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1호). 동법은 다시 i) 9세 이상 12세 미만, ii) 12세 이상 15세 미만, iii) 1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법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책임·육성의 경우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 경우에 그 대상층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규정하고 있다.⁷⁾ 다만, 청소년보호법처럼 연령층을 다시 세분화하는 체계는 없다.

다른 법령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그밖에 중복적 규정을 둔 사례도 나타난다. 즉, 「어린이와 24세 이하인 청소년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자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한다)」(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무

6) 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고, 교도소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행형법 제2조).

7) 청소년을 兩性으로 표현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있다. 동법 제1조는 ‘청소년 및 소녀’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료관람) 제5호).⁸⁾ 반대로, 청소년을 다시 근로청소년,⁹⁾ 학생청소년, 성년인 청소년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다.

건강에 관하여는 청소년을 여성의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 또는 청소년』: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제3호).

⑧ 연소자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는 각종 시설 등의 이용 제한 기준연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소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상의 연령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고령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편의상 용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규정상으로 보면, 반드시 연소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를 병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⑨ 고령자 · 준고령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는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노쇠자’로 구분하여 행형법상 달리 취급하고 있다(행형법시행령 제106조). 국선변호인의 직권선임대상자 또는 형집행 정지 대상자로 70세 이상인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471조).¹⁰⁾

⑩ 정리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생아 : 출생후 28일이내의 영유아
- 영 아 : 출생후 3세 미만의 자
- 유 아 : 3세 이상 6세 미만의 자

8) 동규칙(제6조)은 관람권은 일반권(어른)과 할인권(19세 이상인 청소년 및 군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9) 근로청소년이란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선정기준령 제4조제1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조제2항제11호). 「근로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동직제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5호), 「근로여성 및 청소년」(동규칙 제11조제4항제6호), 「근로청소년」(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제1항제3호) 참조.

10) 현행 법령에 규정되고 있는 최고 고령의 연령은 75세임(상속세 인적공제 계산의 종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연소자 : 18세 미만의 자
- 소년 : 20세 미만의 자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개념 \ 연령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소년																									
청소년																									
미성년자																									

2. 법령상 연령범위 유형

(1) 개관

현행법령상 절대적 연령에 따른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다양하다. 그러나 특정한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는 연령에 의한 적용 구분이 무의미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조사결과 전혀 관련 규정이 없는 연령은 4세, 7세, 10세, 11세, 34세, 37세, 39세, 41세, 42세, 66세, 68세, 69세, 71세~74세, 76세 이상의 경우이다.

연령개념에 따른 개별법으로 특별히 일정한 연령층의 자연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정책목적등에 따라 필요한 대상연령을 각 개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로 법령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노인복지법 등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밖의 대부분 법령이다.

(2) 개별적 연령규정의 목적 유형

연령기준을 택하고 있는 목적으로, i) 수학(교육)능력과 관련된 구분 목적, ii) 책임능력과 관련된 구분 목적, iii) 업무수행능력의 구분 목적, iv) 정책적 보호 정도의 구분 목적, v) 인원산정의 기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수학능력과 관련된 구분

교육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초등학교는 6세 이상 11세까지, 중학교는 12세 이상 14세까지, 고등학교는 15세 이상 17세까지, 대학교는 18세 이상, 대학원은 22세 이상 23세까지(5년과정은 26세까지)로 상정되고 있다.

이는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자격, 각종 훈련원이나 사관학교, 세무대학 등의 입학자격에 연결된다(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국립재활원운영규칙 제13조 제2항 등). 그밖에 이와 관계되는 것은 병역의무(징집연기), 각종 임용자격, 행위능력, 면허기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행위능력등과 관련된 구분

성년과 미성년의 구분, 대리행위가 허용되는 연령규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5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률관계에서의 동의할 수 있는 연령(민법 제869조,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6조제2항), 선서능력(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4항, 민사소송법 제293조), 유언능력(민법 제1061조), 현역병·민방위대 지원자격과 부모의 동의(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병역법 제20조제1항), 선거권, 투표권이 인정되는 연령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밖에 국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방청허용 연령, 가사소송상의 의견청취의무, 총포류의 취급자 제한연령도 이와 관련된다.

③ 경제적 자립능력과 관련된 구분

이는 경제활동능력,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세무조사의 특례로서 자금출처조사의 면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¹¹⁾ 채당금의 상한액 결정 기준(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¹²⁾ 피부양자 내지 부양능력

11) 30세 미만의 자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금융자산으로서 그 금융자산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자금출처조사 면제.

12) 30세 미만인 자는 80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는 100만원, 45세 이상인 자는 120만원임.

자의 기준¹³⁾ 등이 이에 관계된다. 아울러 넓게 본다면, 각종 미성년자 등에 대한 이용료감면등¹⁴⁾도 간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수가 있다.

④ 업무수행능력과 관련된 구분

각종 채용·임용시험 연령 제한, 개인 면허 기준연령, 정년 연령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처럼 20세를 최저연령으로 하는 것(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0조)이 행위능력제도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연령기준을 두고 있다.

개호담당자는 13세 이상이 되는 자녀 또는 형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직공무원은 14세 이상 20세까지(고용직공무원규정 제3조제2항), 선원·항해당직부원은 16세 이상, 경찰중 합정요원·별정우체국직원·하사관·청원경찰·관광종사원·체육지도자·전투경찰·경비원·경비지도사 등은 18세 이상, 신용조사원·사업용자동차운전자·산림보호직원·순경 및 경찰간부후보생은 21세 이상, 기능검정원은 30세 이상(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2항제1호) 등으로 최저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최고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적지 않다. 예컨대, 교육공무원은 40세 이하(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 임업후계자는 45세 미만의 자(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의2), 구조대원은 48세 이하, 구조대장은 50세 이하(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2항) 등이다.

각종 면허는 운전면허, 조종면허, 관리면허 등과 관련하여 연령기준을 두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14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 운전면허는 18세 이상,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는 20세 이상(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 자가용조종사 자격은 17세 이상, 해기사·건설기계조종사면허·선원수첩·구명정수·선박의료관리자·원자력안전관리면허는 18세 이상, 카지노업 허가는 19세 이상(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이다.

13) 부양능력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자임.

14) 엄밀하게 보면, 친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특정시설의 이용을 권장하려는 목적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2세 미만의 어린이 국제·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2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50% 감면(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제4항),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편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아동복지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 18세 이하인 자와 65세 이상인 노인의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등.

상한연령으로는 각종 정년제도가 있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농지 임대차 허용(농지법 제22조제4호)과 65세 이상자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제1항제1호)도 업무수행능력의 한계연령과 관계되는 규정이다.

⑤ 미성년자 · 고령자등의 정책적 보호와 관련된 구분

이는 육체적 발달과정에 있는 연소자에 대하여 육체적 · 정서적 위해나 장애를 금지 · 제한하는 정책과 관련되는 연령규정이 대부분이다. 즉, 연소자를 상대로 하는 판매 · 영업 · 공연 · 고용 · 물건의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반대로 고령자는 육체적 쇠퇴기에 있기 때문에 이의 정책적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극적인 신체적 침해행위의 금지,¹⁵⁾ 신체의 건전한 발달에 유해한 행위 금지,¹⁶⁾ 위험시설로부터의 보호 · 예방,¹⁷⁾ 보호자의 보호의무¹⁸⁾ 등을 규정한 것이다. 연소자의 사용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과 아동복지법이 기본적인 기준 연령을 두고 있고(15세 미만인 자의 고용금지: 근로기준법 제62조제1항), 선원법,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노령연금, 양로연금, 노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에 연령규정을 두고 있다.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각종 시설기준에 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특정한 연령 이하의 연소자에

15)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금지(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8조제1항), 16세 미만인 자의 장기(골수 제외) 적출금지(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제1호), 14세 미만의 자에게 독약 및 극약의 판매금지(약사법 제48조), 18세 미만자에 대한 限外麻藥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금지(마약법 제46조의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0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공연제한(공연법 제2조제6호), 영화상영등급기준(영화진흥법 제21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제1항), 수형자의 분류제도(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15조), 14세 미만의 아동을 홍행 등의 목적으로 곡예를시키는 행위금지(아동복지법 제18조제3호) 등이다.

17) 18세 미만의 선원에 대한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유해작업 종사 금지(선원법 제81조제2항),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허용장소 제한, 종합게임장 이용장소의 출입제한 연령,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야간근로 · 유해사업에의 사용 및 쟁내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3조 이하) 등.

18) 죽도 · 궤도에 12세 미만 자 또는 60세 이상의 자 승차시 보호자동반의무(죽도 · 궤도법시행규칙 제78조), 14세 미만의 자 보호자동반 유선 승선(유선및도선사업법 제12조제4항) 등.

대한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경우와 연소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형(18세 미만에 대한 경범죄처벌의 특례,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형기 감형등)도 이들 연소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관계된다.

⑥ 公的 義務와 관련된 구분

국방의무(징병검사, 입영연기, 병역관계서류제출의무, 예비군·민방위대 편입 대상자), 교육의무(취학연령, 각종 학제관련 규정), 근로의무(취업연령과 각종 임용제도) 등과 관련된 연령의 구분이다. 국적관리와 주민등록관리와 관계되는 연령구분도 여기에 포함되며, 지문등록, 병적편입, 전시특례, 국외여행의 허가, 해외이주신고, 공적 시설 관리자의 신고의무 등도 그 대상을 연령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다.

III. 법제정비방안

1. 연령개념용어의 문제점

현행법령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법령용어를 연령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례와 일치하지 않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아와 유아

영아는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둔 입법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규정상 3세 미만의 자로 해석된다. 유아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로 해석된다.¹⁹⁾ 영유아는 영아와 유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출생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모자보건법 제2조제2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²⁰⁾ 「3세 미만의 유아」,²¹⁾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²²⁾등의 규정 사례는 부적절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유아와 영아를 혼동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19) 유아교육진흥법에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은 만6세가 원칙임.

20)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73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5조제4항.

21) 국민연금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

2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제1항.

② 아동과 소년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兒童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少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인 개념상 고등학생(15세~17세)을 아동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아동과 소년을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구분되지 아니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소년으로 칭하기는 어색하다. 법기술상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회통념상의 개념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법령상 소년과 아동은 그 개념범위에서 18세와 19세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한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으므로,²³⁾ 개념상 청년과 소년으로 구분될 수가 있지만, 9세 미만의 소년은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소년기본법은 오히려 학령상으로 볼 때 중학생에 해당하는 12세 이상의 소년과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나누고 있다(동법 제4조, 제59조).

결국, 청소년기본법과 소년법 및 아동보호법은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 법들이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면서도 법령 상호관계의 문제점과 함께 입법취지와 대상범위의 중복성과 불명확성을 안고 있다.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소자’의 개념이 ‘아동’과 동일한 대상을 의미한다는 것은 개념의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연소자(18세 미만)’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19세 미만)’을 연령에 차이를 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양자가 모두 신체적·정서적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개념 및 정책적 대상범위라고 본다면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③ 고령자와 노인 및 노쇠자

고령자는 55세 이상의 자이며,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자는 준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노쇠자,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²⁴⁾

23) 학제상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 이상)부터 대학원생까지를 대응시킬 수가 있다.

24) 노인의 기준연령은 정의규정으로 된 사례는 없다. 노인복지법은 경로연금의지급대상과 보건·복지조치등의 대상을 65세로 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은 65세 이상을 고령화사회에 대한 통계기준 연령으로 보고 있다.

고령자의 개념은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정년과 임용(채용) 상한연령과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다. 현재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은 최저 50세²⁵⁾이다(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 기타 직렬, 기능군무원).²⁶⁾ 부양의무자의 개념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남자 부양의무자는 5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최고 임용연령은 청원경찰, 준위, 별정우체국직원, 소방구조대장이 50세 이하이고(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 규칙 제21조제2항), 비상대비인력자원 역시 50세까지이다(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향후에 고령자의 기준연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정년과 임용상한연령의 변동에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준연령의 문제점

현행 법령상의 각종 기준연령은 분류기준이 다양하다. i) 행위능력·의사능력·책임능력, ii) 교육법상의 수학능력, iii)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독립 내지 자기보호능력, iv) 경제적 자활능력, v) 사회활동능력 내지 업무수행능력, vi) 공적 의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밖에 특별한 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이 기준으로 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 대상연령을 산정하는 까닭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동 내지 혼재되는 수가 발생하고, 기준되는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타법령상의 관례에 따라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연령이 포함될 수가 있게 된다.

더구나 각 기준을 삼는 능력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각 능력 상호간의 연관성 내지 전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구분하고, 육체적 능력은 신체발달과 정서적 안정성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되 이를 다시 개체로서의 독립성, 자기보호능력, 외부 환경에 대한 감수성 등을 세부적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적 능

25) 현역군인 중에는 하사가 40세, 중사가 45세, 대위 이하가 43세, 소령이 45세이며, 그밖의 상급 군인은 모두 53세 이상이다(군인사법 제8조제1항).

26) 국민연금법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를 50세까지로 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력은 인식력·판단력을 내용으로 하며, 의사능력·행위능력·책임능력 등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으로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객관적·외부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교육제도와 연계시켜 설정하는 것이 기준의 객관화와 일반인의 인식 편의성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제도가 국민의 지·덕·체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이고, 교육 단계와 과정이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법령에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 연령표시의 문제점

연령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출생시를 1세로 하는 것과 출생후 1년이 달한 때를 1세로 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관행상의 연령이고, 후자는 다른 바 만 연령이다.

민법은 연령의 계산에 初日을 산입한다(제145조)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하던 「연령계산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연령에 관하여 3가지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세」, 둘은 「만 ○○세」 그리고 셋은 「○○세에 달한(되는) 때」이다. 이 3가지의 경우가 일반적인 연령개념인 출생 즉시 1세로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滿 나이로 계산한 개념인지가 法文上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1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규정²⁷⁾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滿 나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나, 굳이 「滿 ○○歲」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연령표시는 일반적 연령개념(출생 즉시 1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연령의 표시로서 滿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자가 규정상의 연령 표시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할 것이다. 예컨대, 각종 자격규정에서 「21세 이상」의 표현은 실제로는 입법 취지가 「만 20세」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행위능력자로서 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제외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민법은 성년에 관하여 「만20세로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7) 1세 미만의 자녀 양육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7호,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 등 휴직사유 관련규정 참조.

주요한 기준연령의 하나로 「17세」를 들 수가 있다. 이는 국가의 주민관리체계의 중요 기준연령으로 삼고 있고,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연령이다. 주민등록법은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제17조의8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제32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상의 17세는 현재 실무상으로 만 17세에 해당하는 나이이다. 주민등록법의 경우처럼 현행 개별 규정상의 표시연령 개념이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면, 많은 법령상의 연령 규정은 정정되어야 한다. 의미상으로 명확한 예로는 전전가정의례준칙이 「“수연례”라 함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제2조제5호)라고 규정한 예를 들 수가 있다. ‘만 60세(관행상 연령계산으로는 61세)의 생일’에 ‘수연(회갑연)’을 한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이러한 표현방식의 이중성 때문에 상당한 경우에 원래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준연령이 되는 5세와 6세, 12세와 13세, 13세와 14세, 17세와 18세, 18세와 19세, 20세와 21세의 경우에는 혼동이 심하다. 예컨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린이통학버스」나 「적차상태의 승차정원산정」,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여비·국외여비의 산정이나 보호자 동반의무는 12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령정비를 통하여 규정에서 의미하는 실질적 나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정리하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법현실 변화와 연령조정 문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의무교육기간과 사회교육제도의 발전정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인으로서의 교육제도, 소득수준 내지 경제수준과 근로기준, 가족제도와 친권자 등의 부양의무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일정한 연소자층과 고령자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정도와 밀접하다.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공적 부조제도 등의 사회보장 확대화, 공동체로부터 개인의 독립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다. 구민법등의 일본 법제를 근간으로 형성된 우리 법제에 최근 시장개방과 국제경제화에 따른 영미법계의 법령 및 국제적 모델법령·기준 등의 대폭 도입됨에 따라 각종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연령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조기교육의 열풍과 학제의 탄력성 강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증가, 사회에 조기 진출하는 경제인구의 증가 등의 변화, 청소년의 급격한 신체적 발달도 고려되어야 할 여건변화이다.

각종 시설물의 이용제한에 연령기준보다는 신체지수(예컨대, 키 120cm 이상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확대와 취업에서의 학력파괴현상 증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당연히 초기에는 미성년자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사회인'으로서의 기준연령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능력기준인 20세에 따른 제약을 면하기 어렵다. 현실과 제도가 괴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기능적 공무원의 임용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연령은 행위능력기준에 별로 얹매이지 않고 있다. 양자는 원칙적으로 사회인으로서의 기준연령을 설정하고 이에 행위능력제도를 접근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필요 한 각종 자격이나 시설이용등에 대한 기준도 단순히 청소년보호등의 기준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전자는 생존에 관한 사항이지만, 후자의 청소년보호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성년으로의 성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정책과 관련된 기준연령

(1) 경제능력과 과세

세무조사등의 특례, 채당금제도, 피부양자의 범위, 보조금대상, 이용료 등의 감면 등은 당사자나 친권자 등의 보호자의 경제능력을 고려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능력이나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GDP나 예산규모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향후에도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료 등의 감면은 주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밖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아동의 경우에는 그 대상연령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13세 미만, 18세 이하, 24세 이하, 19세 이상 등으로 초·중·고·대학생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동·소

년·청소년 등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앞에서 지적한 연령표시상의 문제점처럼 잘못 표시된 것인지 정비가 필요하다. 청소년등의 보호목적인지 친권자의 부담완화인지, 감면대상의 확인 편의를 위한 학생기준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는 만17세 미만의 청소년은 학생증과 교복 이외에는 연령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 대부분의 관행이 초·중·고·대학생을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연령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채용·면허 기타 자격기준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시간·위해한 작업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는 다분히 학제와 연관시킨 연령기준이다. 참고로 중학생은 12세 이상 15세 미만이며, 고등학생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에 대하여는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금지하고 있다(선원법 제81조제1항). 근로기준법과 다른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15세 미만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각종 면허기준연령도 근로기준법에 일치시킴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는 14세 미만의 자, 운전면허는 18세 미만의 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의 자, 자가용항공조종사는 17세 미만, 기타 각종 전문면허는 대부분 18세 미만의 자를 결격으로 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으로 구분한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주로 일상적·업무적으로 사용되는 면허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18세 이상)에 일치시킴이 마땅하다고 본다.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경제활동 능력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중시키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이다.

(3) 제한·금지 등 특별보호

청소년을 상한으로 하는 각종 보호제도는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로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의 발달정도에 따라 그 보호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준연령은 보면, 9세·12세·15세·18세·20세이다.

이는 초·중·고등학생 및 미성년자에 대비되는 연령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i) 14세 미만의 자(전자충격기 등 사용금지), ii) 16세 미만의 자(장기적출의 제한), iii) 19세 미만의 자(카지노·사행행위영업소 출입제한)에 대한 제한이다.

개체로서의 육체적 발달·노쇠정도에 따른 독립성 내지 완전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신생아, 영아, 유아를 제1그룹, 중학생 이하의 14세 이하를 제2그룹, 고등학생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3그룹, 성년 이상 24세까지의 청년을 제4그룹,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5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주로 신체의 발달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의 보호정도를 결정하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능력으로서 의사능력 내지 행위 능력은 독립적 법률행위능력 측면에서 보아야 하므로 육체적 발달기준을 여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i)의 경우는 15세 미만의 자(중학생 이하)로 함이 바람직하고, ii)의 경우는 유언능력이 만17세이고, 민방위대 및 현역병 지원자격이 17세인 점등을 고려할 때, 대리할 수 없는 최소한의 행위능력이라는 측면에서 17세 미만의 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iii)의 경우는 다분히 정책적인 결정이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로 하거나 만18세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행위능력제도와 일치시킨 것이고, 후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또는 대학생)을 고려한 것이다. 독립적인 ‘사회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과 직결된다.

민법은 만18세(여자는 만16세)이상을 婚姻適齡으로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807조), 각종 공적 의무(국방, 근로, 납세의무)의 연령이 18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민법상의 행위능력제도와 구분할 수 있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제도는 18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IV. 결 론

앞에서 살핀 바처럼, 연령범위의 설정 근거 내지 목적은 다양하다. 연령은 이러한 근거나 목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척도에 불과하다. 일정한 연령층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에, 그 범위 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령과 관계되는 법령의 제·개정시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각종 능력과의 관계 정리에 관한 것이다.

행위능력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민사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수학능력과 경제적 자활능력 및 사회활동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체적 독립 내지 자기보호능력 및 의사능력도 공교육을 통하여 배양된다는 점에서 교육제도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종 비용산정과 이용료 감면문제등은 오히려 육체적 발달과 관련된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보장제도의 수준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겠다.

둘째, 책임능력과 보호의무의 조화에 관한 것이다.

책임능력과 관련되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인 ‘14세 미만’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반대해석으로 보호자의 절대적 동반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요하는 경우이다. 각종 위험행위의 제한(총기·석궁의 사격 제한, 수난구호업무종사, 등)은 이러한 아동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신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도덕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연령을 하향하는 경우가 있다. 12세 미만자에 대한 국회방청허가 등이다.

셋째, 의사능력·행위능력 관련 연령 조정의 문제이다.

현행법령은 의사능력·행위능력과 관련한 것으로는 14세 이상(사망한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 대리), 15세 이상(가사소송상 의견청취의무, 입양·파양시 본인의 승락), 16세 이상(선서능력, 본인 장기적출 동의), 17세 이상(유언, 민방위대 지원, 인감증명신청의 대리)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각종 대리행위등’은 14세 이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리할 수 없는 행위’는 17세 이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한다면, 형사미성년자 및 의사무능력자의 연령은 14세 이하(중학생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령의 계산과 표시에 통일성 문제이다.

법문상의 표현은 ‘○○세’로 하되, 이른 바 「만 나이」의 개념에 해당하는 연령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한 기준연령인 민법상 행위능력의 20세와 주

민권리를 위한 주민등록법상 17세가 모두 만 나이에 해당하고, 많은 법령상의 연령규정이 만 나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도 이에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세’라는 표현도 지양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연령계산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다섯째, 관행과 법령의 일치화문제이다.

연령개념은 모든 법령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입법의 원칙이고 실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나이(연령)의 표시에 관한 일반인의 관행도 이제는 법령상의 개념처럼 「출생이후 1년이 지난 경우」를 ‘1세’로 정의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용례가 전 국민에게 홍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법령의 연령표시를 「만 ○○세」라는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현실과 법령이 일치될 것이다.